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훈보상대상자 명칭 변경〉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90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보훈보상대상자 명칭 변경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2. 제안일 : 2024. 9. 3.
3. 회부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 I·II·III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 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1호 등).

Ⅲ. 검토의견: 보훈보상대상자 명칭 변경

□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훈보상대상자 명칭 중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u>재해사망군경</u>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u>재해부상군경</u>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 ----- ----- ----- ----- ----- -. 1. <u>재해순직군경</u> ----- ----- ----- ----- ----- ----- ----- ----- 2. <u>재해공상군경</u> ----- -----

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3. 재해순직공무원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 ③ (생략)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

4. 재해공상공무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상금) ①

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 ⑤ (생략)

제17조(간호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18조(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

-----.

1. 재해공상군경

2. 재해순직군경-----

3. 재해공상군경-----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간호수당) ①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양가족수당) ① -----

-----.

1. 재해공상군경-----

2. 재해순직군경-----

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재해 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생략)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

3. 재해순직군경-----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재해 공상군경-----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

1.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2.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해공상군

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생 략)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

-----.

1.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2.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
3.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재해공상군경,
재해공상공무원-----

-----.

제48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제48조(직업훈련) ① -----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진료) ①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

공무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 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2.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⑦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재해순직군경-----

2. -----
-----재해공상군경-----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보철구의 지급) <u>재해부상</u> <u>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u>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제52조(보철구의 지급) <u>재해공상</u> <u>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u> ----- ----- ----- ----- -----.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 보훈부장관은 <u>재해부상군경 및</u> <u>재해부상공무원의</u> 신체기능 퇴 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 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 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 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① ----- ----- <u>재해공상군경 및 재</u> <u>해공상공무원</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대부 대상자) ----- -----.
1. <u>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u> <u>무원</u>	1. <u>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u> <u>무원</u>
2. <u>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u> <u>무원의 배우자</u>	2. <u>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u> <u>무원</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각각 “재

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으로, 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각각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분류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지원하고 있음.

[표 1]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현황

(2024년 9월 기준)

구 분	계	본인	유족
재해사망군경	1,511	-	1,511
재해부상군경	6,566	6,005	561
재해사망공무원	265	-	265
재해부상공무원	231	212	19
합 계	8,573	6,217	2,356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군인사법」은 각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도 “순직자”로 구분하고 있음.¹⁾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군인,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있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칭 중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보훈 관계법률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 제정 당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등을 “공상군경” 등으로 현행법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음.

다. 순직III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표 2]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구분

대상	내용	적용 법률	명칭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u>직접적 관련 있는</u>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질병 포함)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u>직접적 관련 없는</u>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질병 포함)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군경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u>직접적인 관련이 있는</u>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 포함)	국가유공자법	순직공무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u>직접적인 관련이 없는</u>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 포함)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 이는, 2012년 보훈보상체계 개편 당시, 다양한 유형의 사망·상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행정업무, 출·퇴근, 당직·출장 중 취침 등의 상황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보훈대상자의 명칭도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²⁾³⁾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제정) ◇ 제정이유

-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안) 검토보고서」(2010. 2.), p.106-p.110 참조.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현재 각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각 보훈대상자의 사망·상이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되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표 3]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유형(예시)

구분	내용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 ②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③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 등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④ ①~③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 등 ⑤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 등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 공무원	①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인정 직무수행 외 직무수행행위 및 이를 위한 이동행위 ②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인정 교육훈련 외 교육훈련 및 이를 위한 이동행위 ③ 출장 등 음식물 중독, ④ 출·퇴근 중 발생 사고 ⑤ 당직·출장 중 취침 사고·재해 ⑥ 의무복무자로서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체력단련 중 ⑦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등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재구성

- 즉, 보훈행정영역에서 각 보훈대상자의 명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⁵⁾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용어 사용을 통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함께 보훈 관계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칭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게 될 경우 보훈대상의 희생 정도 구분에 있어, 의미 전달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
- 4) 보훈행정용어집(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순직”을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 5) 군경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심사 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 유형은 질병(14),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자해행위(15)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된 유형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11, 16)가 상위 2개 유형으로 나타남.

